국무총리훈령 제 582 호

부처명칭 변경 등에 따른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령

제1조(「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”을 “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”으로, “보건복지가족부”를 “보건복지부”로 한다.

제2조(「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」의 개정) 국회서면질문서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국회서면질문서처리지침”을 “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”으로 한다.

제1호 중 “국회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「국회법」 제122조에 따라”로, “결제과정등”을 “결재과정 등”으로 한다.

제3호가목 중 “국무총리비서실(정무)”을 “국무총리실”로 한다.

별첨 중 “국회법 제115조”를 “「국회법」 제122조”로 한다.

제3조(「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」의 개정) 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1호 중 “보건복지가족부”를 “보건복지부”로, “국무총리

실 복지여성정책관”을 “국무총리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3항 중 “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”을 “국무총리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보건복지가족부”를 “보건복지부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장”을 “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”으로, “보건복지가족부 소속”을 “보건복지부 소속”으로 한다.

제8조의2제2항 및 제3항 중 “보건복지가족부장관”을 각각 “보건복지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경제협력개발기구 대한민국 정책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생 략)	제5조(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이 되고, 위원은 기획재정부, 외교통상부,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가족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.	② -------- 국무총리실 국정운영1실장---------- 보건복지부----------.

국회서면질문서처리지침 일부개정령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국회서면질문서처리지침	**국회 서면질문서 처리 지침**
1. 목적 이 지침은 국회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으로부터 서면질문서가 정부에 이송되어온 경우, 이에 대한 정부답변서의 작성단위, 결재권자 및 결제과정등 처리절차를 정함으로써 정부답변의 효율을 기하고자 함. 2. (생 략) 3. 행정사항 가. 답변서의 시행시에는 국무총리비서실(정무)에 사본 1부를 제출한다. 나.(생 략)	1. 목적 --------- 「국회법」 제122조에 따라 ---------- ---------- 결재과정 등 ---------- -----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 가. ---------- 국무총리실---------- ----------. 나. (현행과 같음)

마약류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구성) ①·② (생 략)	제3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.	③----------.
1. 기획재정부·교육과학기술부·외교통상부·법무부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가족부·국가정보원·대검찰청·관세청·경찰청·식품의약품안전청·해양경찰청의 관계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	1. ----------보건복지부----------국무총리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실무협의회) ①·② (생략)	제7조(실무협의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실무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이 된다.	③---------- 국무총리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-------.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수사·단속·정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제4항의 위원 중 외교통상부·국가정보원·대검찰청·관세청·경찰청·식품의약품안전청·해양경찰청의 해당 위원과 민간위원중 협의회의 의장이	⑥----------

지명하는 자가 되고, 치료·재활·교육·홍보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·법무부·보건복지가족부·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해당위원과 민간위원중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	----------보건복지부----------.
제8조(간사) ① (생 략)	제8조(간사) ① (현행과 같음)
②협의회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장이 되고,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의 공무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	②----------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---------- 보건복지부 소속----------.
제8조의2(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) ① (생 략)	제8조의2(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보건복지부가족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.	②보건복지부장관----------.
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제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③보건복지부장관----------.